

제268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80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11월 5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2. 개정이유

- 가. 다양한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 나.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 배제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12조제1항)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배제(안 제12조제3항)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변경(안 제12조제3항제2호)
 -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지역·성별 고려(안 제12조제4항)
- 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10. 2. ~ 10.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12조제1항)
 - 30명 이내 → 50명 이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각 국장, 관련 보건소장) 위촉 조항 삭제(안 제12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변경(안 제12조제3항제2호)
 -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지역·성별 고려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대상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일반 주민까지 교육대상 확대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의 수를 기존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한 것, 당연직 위원 위촉을 배제한 것, 위원 구성시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수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개선 의견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지역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